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293호 2012. 8. 31(금)

<b>훈 령</b>
○ 사천시 훈령 제262호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 2
<b>고 시</b>
○ 사천시 고시 제2012-1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2012-1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 10
<b>공 고</b>
○ 사천시 공고 제2012-143호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 준공(1공구) 인가 공고 ..... 11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2)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62호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경찰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1-1, 별표2, 별표2-1,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3)

[별표 1-1]

## 청경의 배치 목적 및 일반업무 (제3조제2항 관련)

부 서 별	배 치 목 적	일 반 업 무
총 무 과	청사 경비	○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 방호, 방화, 기타 보안순찰 점검 ○ 청사내외 주차질서 확립
사회복지과	시설물 경비	○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및 시설물 경비
문화관광과	시설물 경비	○ 삼천포대교 공원, 만남의 광장 및 박재삼박물관 시설물 경비
체육지원과	시설물 경비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비 -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실내수영장, 사천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물 경비
건 축 과	광고물 순찰	○ 광고시설물 순찰 관리
건 설 과	하천 감시	○ 하천구역 순찰 및 경비 ○ 재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재난관리과	재해예방·예찰	○ 재난상황실 관리
도로교통과	도로교량감시 및 주·정차 순찰	○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 차량감시 ○ 주·정차 순찰 및 통제실 경비
녹지공원과	산림 감시	○ 산림훼손,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실시 ○ 이상유무시 지휘계통 보고
환경사업소	시설물 경비	○ 쓰레기매립장 시설경비
하수도사업소	시설물 경비	○ 사업소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4)

[별표 2]

## 징 계 양 정 기 준

(제10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근무지 이탈 및 순찰태만 나. 무단결근 및 조퇴, 출근시간 지참	파면-해임 파면	정직 해임	감봉 정직-감봉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업무 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나. 성희롱·성매매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음주운전	별표 2-1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5)

[별표 2-1]

##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음주운전횟수는시행일 기준으로 하여 그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기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6)

[별표 3]

##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과 면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7)

##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2-130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3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2 - 2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2년 7월 23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갯벌복원 사업지 주변에 부대시설의 일환으로 갯벌 탐방로 설치를 위함.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291m<sup>2</sup>
  - PE부잔교(L=50m, B=2.18m), 도교(L=10m, B=1m), 데크(L=5m, B=5m)]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2년 7월 23일~2027년 7월 22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8)

## 승 인 조 건

1. 피승인자는 승인목적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 목적과 달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수 없으며,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피승인자가 본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시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설치물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점용·사용 공유수면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4. 선박의 이, 접안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5.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인근을 지나는 어선 등의 항행과 관련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6.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 설치 및 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7. 본 해역이용협의 기간이 경과하여 또 다시 해역이용협의를 할 경우에는 본 해역이용 협의 내용의 이행결과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5호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10.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1.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12.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9)

사천시 고시 제2012-13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7일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2-2호(2012. 7. 23.)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갯벌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기존도로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갯벌복원사업지 주변에 부대시설의 일환으로 갯벌 탐방로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사항
  - 공사기간 : 2012. 7. 27. ~ 2012. 11. 15.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일자 : 2012. 7. 27.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승인신고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승인 신고수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10)

##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2-143호

###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분준공(1공구)인가 공고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5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6항,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분준공(1공구)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축동구호농공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김대성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7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191번지 일원

○ 면 적 : 전체 106,424.9㎡ 중 1공구 100,627.1㎡

4. 준공인가연월일

○ 부분준공(1공구) : 2012. 8. 20.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도로, 완충녹지, 구거)은 당해시설을 관리 할 지방자치단체(사천시)에 귀속토록 함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11)

## ▷ 공공시설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계	1공구	2공구		
계	106,424.9	100,627.1	5,797.8	100.0	
<input type="checkbox"/> 분양, 임대, 양도	80,971.1	77,809.7	3,161.4	76.1	
산업시설용지	77,809.7	77,809.7	-	73.1	
지원시설용지	3,161.4	-	3,161.4	3.0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자(실수요자) 관리	2,375.1	2,375.1	-	2.2	
배수지	2,375.1	2,375.1	-	2.2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사천시) 귀속	23,078.7	20,442.3	2,636.4	21.7	
도 로	10,074.6	10,074.6	-	9.5	
완충녹지	9,742.4	9,742.4	-	9.1	
구 거	625.3	625.3	-	0.6	
오·폐수처리장	2,636.4	-	2,636.4	2.5	2공구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12)

## ▷ 지방자치단체(사천시)에 귀속될 공공시설 편입조서

리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구호리	939	도	10,004.5	10,004.5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구호리	940	도	70.1	70.1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도 로			10,074.6	10,074.6			1공구
구호리	931	공	5,845.6	5,845.6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구호리	941	공	3,896.8	3,896.8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완충녹지			9,742.4	9,742.4			1공구
구호리	945	구	625.3	625.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구 거			625.3	625.3			1공구

6. 관계서류는 사천시 공단조성과(☎055-831-346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13)

**별첨**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리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구호리	931	공	5,845.6	5,845.6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2	구호리	932	장	4,748.5	4,748.5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3	구호리	933	장	12,011.8	12,011.8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4	구호리	934	장	9,981.0	9,981.0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5	구호리	935	장	11,447.0	11,447.0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6	구호리	939	도	10,004.5	10,004.5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7	구호리	940	도	70.1	70.1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8	구호리	941	공	3,896.8	3,896.8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9	구호리	942	장	27,306.3	27,306.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10	구호리	943	장	6,211.4	6,211.4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11	구호리	944	장	6,103.7	6,103.7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12	구호리	945	구	625.3	625.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13	구호리	946	수	1,653.2	1,653.2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14	구호리	947	공	721.9	721.9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주)	
계				100,627.1	100,627.1			

# 사 천 시 공 보

제293호(14)

## ■ 토지이용계획도 (S=1:2,400)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계	1공구	2공구	
계	106,424.9	100,627.1	5,797.8	100.0
▷ 산업시설 용지	77,809.7	77,809.7	-	73.1
▷ 지원시설 용지	3,161.4	-	3,161.4	3.0
▷ 공공시설 용지	25,453.8	22,817.4	2,636.4	23.9
-도로	10,074.6	10,074.6	-	9.5
-배수지	2,413.4	2,413.4	-	2.3
-오·폐수처리장	2,636.4	-	2,636.4	2.5
-완충녹지	9,742.4	9,742.4	-	9.1
-구 거	587.0	587.0	-	0.5

